

**고 시**

● **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76호**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울산다운2 A-10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840호(2019.12.31)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A-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울산다운2 A-10BL 공공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시행자
 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3. 사업시행지역 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,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, 척과리 일원,  
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-10BL
- 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)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불가능